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5.23(금) 평창군수(환경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과장 최찬웅)

-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2009.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대규모 점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평창군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